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706
----------	-------

발의연월일 : 2026. 9. 30.

발 의 자 : 김태년 · 문정복 · 민병덕
이광희 · 양부남 · 김영환
윤종균 · 정태호 · 김성희
김영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한국투자공사는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해외에서 운용함으로써 국가 외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과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해 왔음.

그러나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첨단산업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반도체,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에너지, 핵심소재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산업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본을 공급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주요국 역시 국부펀드와 정책금융기관 등을 활용하여 자국의 전략산업과 핵심기업에 대한 장기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이에 한국투자공사의 역할을 기존의 위탁자산 운용에 한정하지 않고, 국부의 체계적인 관리·운용·축적과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장기투자기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기존 위탁자산 운용업무를 위탁계정으로 구분하는 한편,

전략산업에 투자하기 위한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하고 정부의 현금·현물출자, 출연금, 차입금,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안정적인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전략투자계정이 전략산업 분야의 기업, 집합투자기구 등에 출자·투자하고 필요한 경우 신용공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전략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투자담당 이사와 민간위원을 확보하는 등 한국투자공사의 지배구조와 투자체계를 개편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국가가 보유한 자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축적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전략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미래세대를 위한 국부를 확충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및 제38조의2 신설 등).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투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행하게 하여”를 “수행하게 하고, 국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용·축적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며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와”로 한다.

제2조 중 ““자산위탁”이라 함은 정부·한국은행 또는 「국가재정법」에 의한 기금의 관리주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가 보유하는 자산의 운용을 한국투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맡기고, 그 운용에 대한 대가로 공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를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자산위탁”이란 정부·한국은행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의 관리주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가 보유하는 자산(이하 “위탁자산”이라 한다)의 운용을 한국투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맡기고, 그 운용에 대한 대가로 공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탁계정”이란 위탁자산의 투자를 위하여 공사에 설치하는 계정을 말한다.

3. “전략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산업을 말한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이 포함된 분야

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다.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이 포함된 분야

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분야

마.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핵심전략기술이 포함된 분야

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가목의 시설을 건설·운영하거나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속한 분야

사.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2조에 따른 경제안보품목·경제안보서비스 및 위기품목이 속한 분야

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금융업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이 속하거나 같은 조에 따른 금융거래등이 포함된 분야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분야와 국내외에서 공급망으로 연결된 분야

차. 그 밖에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 증진에 중요한 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4. “전략투자계정”이란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위하여 공사에 설치하는 계정을 말한다.

5. “전략투자자산”이란 제31조의4제1항에 따른 재원 및 그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을 말한다.

제5조 중 “1조원으로 하고, 정부가”를 “정부가”로, “출자한다”를 “출자하며, 자본금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위탁계정 및 전략투자계정의 관리·운용 절차 및 체계에 관한 사항

제9조제2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제31조의4제2항에 따른 채권의 발행 및 차입에 관한 사항

제10조제1항 중 “12인”을 “15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6인”을 “9인”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금융 또는 투자분야에 대한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을 “금융, 투자분야 또는 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연구경력이 총 10년 이상인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투자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을 “투자업무 또는 전략산업 분야에서 총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금융·투자 또는 기업 감사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을 “금융·투자·전략산업 분야 또는 기업 감사업무를 총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금융산업 및 기업경영”을 “금융산업, 기업경영 및 전략산업 분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상공회의소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1인

제15조 중 “5인”을 “7인”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투자담당”을 “위탁계정 투자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사의 전략투자계정 투자담당 이사는 제2항에 따른 경력과 전략산업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제1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투자담당 이사는 제18조의2에 따른 투자이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이 임명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투자이사추천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투자담당 이사의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투자이사추천

위원회를 둔다.

② 투자이사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장이 된다.

③ 투자이사추천위원회는 주요 일간신문에 투자담당 이사 후보의 모집 공고를 하여야 하며, 이와 별도로 책임자로 판단되는 투자담당 이사 후보를 조사하거나 전문단체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투자이사추천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모집하거나 조사한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담당 이사 후보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투자담당 이사 후보로 추천할 사람과 계약 조건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⑤ 투자이사추천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심사와 협의 결과에 따라 투자담당 이사 후보를 운영위원회에 추천하고, 계약서안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이사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 후보자의 모집·심사, 계약 조건의 협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사의 임원·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자산의 운용 업무에 관한 자문 등을 위하여 공사가 위촉한 사람(그 위촉이 종료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의 제목 “업무”를 “위탁계정 업무”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를 “위탁계정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위탁기관에서 위탁받은 자산의”를 “위탁자산의”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중 “자산의”를 “위탁자산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위탁재산을 통하여 다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위탁받은 자산을”을 각각 “위탁자산을”로 한다.

제4장의2(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전략투자계정 업무

제31조의2(전략투자계정의 설치 및 업무) ① 공사는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위하여 전략투자계정을 설치한다.

② 공사는 전략투자계정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략투자자산의 관리 및 운용
2.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교류·협력
3. 제31조의4제2항에 따른 채권의 발행 및 차입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부수업무로서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업무

제31조의3(전략투자자산의 운용용도 및 운용방식 등) ① 공사는 전략

투자계정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전략투자자산을 운용한다.

1. 전략산업 분야에 속하는 기업 등에 대한 출자·투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을 말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것에 대한 출자·투자
 3. 자산의 매매 및 임대
 4. 대출,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그 밖의 방법에 따른 신용공여
 5. 국내외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대여
 6. 국채·공채 등의 매입
 7.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외국환업무
 8.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9. 제31조의4제2항에 따른 채권의 원리금 상환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 ②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용도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③ 전략투자자산 및 그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제1항 각 호의 용도, 정부에 대한 배당 또는 국고로의 환수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처

분할 수 없다. 다만, 공사가 보유하는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주식은 정부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없다.

제31조의4(전략투자계정의 재원) ① 전략투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의 출자(현금출자와 현물출자를 모두 포함한다)
2. 정부의 출연금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따른 물납으로 수납한 재산 중 정부가 공사에 현물출자한 재산
4. 정부, 국내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5. 제2항에 따른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6.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국부 증진을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기부하는 현금, 증권 및 그 밖의 재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재원으로부터 발생한 운용수익과 그 밖의 수익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② 공사는 제31조의3에 따른 전략투자자산의 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제2항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매회 그 금액

· 조건과 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⑤ 정부는 제2항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공사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6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접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1항 중 “공사의 회계는 위탁자산의 회계와”를 “공사는 위탁계정, 전략투자계정 및 그 밖의 계정의 회계를 각각”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탁받은 자산에 대한 공사의”를 “위탁계정 및 전략투자계정별”로 한다.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9항(중

전의 제5항) 중 “이름”을 “같은 법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공사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사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사에 대해서는 「한국은행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공사에 대해서는 「은행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사가 은행(다음 각 호의 은행은 제외한다)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 및 제16조의2를 적용한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⑤ 공사(공사가 전략투자자산을 운용할 목적으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공사가 제31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31조의3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등록·신고 등을 하거나 받은 것으로 본다.

1.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

2. 「외국환거래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신고수리

⑩ 제31조의3에 따라 공사가 출자한 법인, 조합, 단체 등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출자 전부터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출자 외의 사유로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공사가 제31조 및 제31조의3에 따른 자산의 관리·운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행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특별법에 따른 출자에 대한 특례) ①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자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하거나 발행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유하여야 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해당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②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정부가 일정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지분 또는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특별법의 정부 출자 또는 자본금 보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사가 보유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지분은 정부가 보유한

것으로 본다.

제40조 중 “제13조(제28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을 “제13조(제28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8조제3항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38조제11항 및 제38조의2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 제3조 및 제5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재정경제부장관과 공사는 이 법 시행 전에 운영위원회 위원 및 임원의 선임,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투자이사추천위원회의 구성과 투자담당 이사 후보의 모집·심사, 조직·인력 및 회계체계의 구축 등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현물출자에 관한 특례) ① 정부는 이 법 시행 전에 「국유재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전략투자계정의 재원으로 사용할 재산을 공사에 현물출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자된 재산은 출자한 날부터 전략투자계정의 자산으로 본다.

제4조(투자담당 이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

조제2항에 따른 투자담당 이사는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탁계정 투자담당 이사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을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투자공사를 설립함으로써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운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여 금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수행하게 하고, 국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용·축적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며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자산위탁”이라 함은 정부·한국은행 또는 「국가재정법」에 의한 기금의 관리주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가 보유하는 자산의 운용을 한국투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맡기고, 그 운용에 대한 대가로 공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1. “자산위탁”이란 정부·한국은행 또는 「국가재정법」에

<신 설>

<신 설>

따른 기금의 관리주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가 보유하는 자산(이하 “위탁자산”이라 한다)의 운용을 한국투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맡기고, 그 운용에 대한 대가로 공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탁계정”이란 위탁자산의 투자를 위하여 공사에 설치하는 계정을 말한다.

3. “전략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산업을 말한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이 포함된 분야

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다.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국
가전략기술이 포함된 분야
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9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
심기술이 포함된 분야
마.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
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핵심전략기
술이 포함된 분야
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가목의 시설을 건설·운영
하거나 이와 관련된 서비
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속
한 분야
사.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
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2조에 따른 경제안보품
목·경제안보서비스 및 위
기품목이 속한 분야
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금융업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
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u>를」 제2조에 따른 금융회 사등이 속하거나 같은 조 에 따른 금융거래등이 포 함된 분야</u>
	<u>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분 야와 국내외에서 공급망으 로 연결된 분야</u>
	<u>차. 그 밖에 경제 및 국가안 보 이익 증진에 중요한 분 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분야</u>
<u><신 설></u>	4. “전략투자계정”이란 전략산 업에 대한 투자를 위하여 공 사에 설치하는 계정을 말한 다.
<u><신 설></u>	5. “전략투자자산”이란 제31조 의4제1항에 따른 재원 및 그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을 말한 다.
제5조(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1 <u>조원으로 하고, 정부가 전액 출 자한다.</u>	제5조(자본금) ----- <u>정부가-----출자하며, 자본금 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 다.</u>
제6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야 한다.	제6조(정관) ① ----- ----- -----.

1. ~ 6. (생략) <u><신설></u> 7. ~ 12. (생략) ② (생략) 제9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생략)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 9. (생략) <u><신설></u> 10. (생략)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u>12인</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 1. (생략) 2. 제14조에 따른 민간위원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 <u>6인</u> 이내 3.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6의2. 위탁계정 및 전략투자계정의 관리·운용 절차 및 체계에 관한 사항 7. ~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9. (현행과 같음) 9의2. 제31조의4제2항에 따른 채권의 발행 및 차입에 관한 사항 10. (현행과 같음)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 ----- ---<u>15인</u>----- -----. ② ----- -----. 1. (현행과 같음) 2. ----- ----- ----- ----- -----<u>9인</u>----- 3. (현행과 같음)
--	--

③ ~ ⑤ (생략)

제11조(민간위원의 자격요건) ①

민간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재직하면서 금융 또는 투자분야에 대한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서 투자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
3.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로 금융·투자 또는 기업 감사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

②·③ (생략)

제14조(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

① (생략)

② 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금융산업 및 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 1인을 포함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민간위원의 자격요건) ①

-----.

1. -----
-----금융, 투자분야 또는 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연구경력이 총 10년 이상인 사람
2. -----
-----투자업무 또는 전략산업 분야에서 총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
-----금융·투자·전략산업 분야 또는 기업 감사업무를 총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4조(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금융산업, 기업경영 및 전략산업 분야-----

하여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 6. (생략)

<신설>

④ (생략)

제15조(임원) 공사에는 사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제16조(임원의 자격요건) ① (생략)

② 공사의 투자담당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서 10년 이상 투자업무에 종사한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

③ -----

-----.

1. ~ 6. (현행과 같음)

7. 「상공회의소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1인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임원) -----
-----7인-----
-----.

제16조(임원의 자격요건) ① (현행과 같음)

② -----위탁계정 투자담당-----

-----.

③ 공사의 전략투자계정 투자담당 이사는 제2항에 따른 경력과 전략산업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③ (생략) 제17조(임원의 임면) ① (생략) ② 사장을 제외한 이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이 임명한다. <u><단서 신설></u> ③ (생략) <u><신설></u>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7조(임원의 임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다만,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투자담당 이사는 제18조의2에 따른 투자이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이 임명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투자이사추천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투자담당 이사의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투자이사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투자이사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장이 된다. ③ 투자이사추천위원회는 주요 일간신문에 투자담당 이사 후보의 모집 공고를 하여야 하며, 이와 별도로 책임자로 판단되는 투자담당 이사 후보를 조사하거나 전문단체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

제28조(겸직금지의무 등) ①·②
(생략)
<신설>

④ 투자이사추천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모집하거나 조사한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담당 이사 후보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투자담당 이사 후보로 추천할 사람과 계약 조건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⑤ 투자이사추천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심사와 협의 결과에 따라 투자담당 이사 후보를 운영위원회에 추천하고, 계약서안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이사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 후보자의 모집·심사, 계약 조건의 협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겸직금지의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공사의 임원·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자산의 운용 업무에 관한 자문 등을 위하여 공사가 위촉한 사람(그 위촉이 종료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제4장 업무

제29조(업무의 범위) ① 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탁기관에서 위탁받은 자산
의 관리 및 운용

2. 3. (생략)

② (생략)

제31조(자산의 운용용도 및 운용
방식 등) ① 공사는 다음 각호
의 용도로 자산을 운용한다.

1. ~ 6. (생략)

② (생략)

③ 공사는 위탁받은 자산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에 따른 국내외 집합
투자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에
재위탁할 수 있다.

④ 공사는 위탁받은 자산을 외
국에서 외화표시 자산으로 운
용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일시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산을 원화표시 자

업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
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위탁계정 업무

제29조(업무의 범위) ① -----
위탁계정을 통하여 다음 각 호
의-----.

1. 위탁자산의-----

2.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위탁자산의 운용용도 및
운용방식 등) ① -----위탁
자산을 통하여 다음-----
-----.

1.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위탁자산을-----

-----.

④ -----위탁자산을-----

-----.

⑤ -----

--위탁자산을-----

산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기관에의 예치, 국공채 매입 등 안정적·중립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⑥ (생략)

<신설>

<신설>

<신설>

-----.

-----.

⑥ (현행과 같음)

제4장의2 전략투자계정 업무

제31조의2(전략투자계정의 설치

및 업무) ① 공사는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위하여 전략투자계정을 설치한다.

② 공사는 전략투자계정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략투자자산의 관리 및 운용

2.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교류·협력

3. 제31조의4제2항에 따른 채권의 발행 및 차입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부수업무로서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업무

제31조의3(전략투자자산의 운용

용도 및 운용방식 등) ① 공사는 전략투자계정을 통하여 다

음 각 호의 용도로 전략투자자산을 운용한다.

1. 전략산업 분야에 속하는 기업 등에 대한 출자·투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을 말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것에 대한 출자·투자

3. 자산의 매매 및 임대

4. 대출,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그 밖의 방법에 따른 신용공여

5. 국내외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대여

6. 국채·공채 등의 매입

7.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

<신 설>

항제16호에 따른 외국환업무

8.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9. 제31조의4제2항에 따른 채권
의 원리금 상환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용도

②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용도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전략투자자산 및 그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제1항 각 호의
용도, 정부에 대한 배당 또는
국고로의 환수 외의 용도로 사
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다
만, 공사가 보유하는 「한국산
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
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
른 한국수출입은행 및 「중소
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
은행의 주식은 정부의 동의 없
이 처분할 수 없다.

제31조의4(전략투자계정의 재원)

① 전략투자계정의 재원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의 출자(현금출자와 현

물출자를 모두 포함한다)

2. 정부의 출연금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
3조에 따른 물납으로 수납한
재산 중 정부가 공사에 현물
출자한 재산

4. 정부, 국내외 금융기관 등으
로부터의 차입금

5. 제2항에 따른 채권의 발행으
로 조성한 자금

6.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국
부 증진을 위한 공익적 목적
으로 기부하는 현금, 증권 및
그 밖의 재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재원
으로부터 발생한 운용수익과
그 밖의 수익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재원

② 공사는 제31조의3에 따른
전략투자자산의 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불가
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채권을 발
행하거나 자금을 차입할 수 있
다.

③ 공사는 제2항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매회 그 금액·조건과 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⑤ 정부는 제2항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공사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6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접수 절차 및 방

제33조(회계처리의 구분) ① 공사의 회계는 위탁자산의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36조(공고) ① (생략)

② 공사는 회계연도마다 위탁 받은 자산에 대한 공사의 자산 운용실적 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제3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신설>

<신설>

<신설>

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회계처리의 구분) ① 공사는 위탁계정, 전략투자계정 및 그 밖의 계정의 회계를 각각-----.

② (현행과 같음)

제36조(공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위탁 계정 및 전략투자계정별-----

-----.

1. ~ 4. (현행과 같음)

제3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공사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사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사에 대해서는 「한국은행법」 및 「금융회사의 지

<신 설>

<신 설>

① (생 략)

② 공사가 제31조제1항 각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거래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등록·신고 등을 하거나 받은 것

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공사에 대해서는 「은행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사가 은행(다음 각 호의 은행은 제외한다)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 및 제16조의2를 적용한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⑤ 공사(공사가 전략투자자산을 운용할 목적으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현행 제1항과 같음)

⑦ 공사가 제31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31조의3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할 때에는 다음

으로 본다.

1.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1

항에 따른 등록

2. 「외국환거래법」 제18조제1

항에 따른 신고

3. (삭 제)

4. 「외국환거래법」 제18조제3

항에 따른 신고수리

③ (생 략)

④ (삭 제)

⑤ 공사는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4조·제63조·제88조 및 제91조와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적용받지 아니한다.

<신 설>

<신 설>

각 호의 등록·신고 등을 하거나 받은 것으로 본다.

1.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1

항에 따른 등록

2. 「외국환거래법」 제18조제1

항에 따른 신고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제3

항에 따른 신고수리

⑧ (현행 제3항과 같음)

⑨-----

--같은 법을-----.

⑩ 제31조의3에 따라 공사가 출자한 법인, 조합, 단체 등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출자 전부터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출자 외의 사유로 공공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공사가 제31조 및 제31조의

<신 설>

3에 따른 자산의 관리·운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행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의2(특별법에 따른 출자에 대한 특례) ①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자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하거나 발행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유하여야 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해당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②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정부가 일정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지분 또는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특별법의 정부 출자 또는 자본금 보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사가 보유

제40조(벌칙) <u>제13조(제28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u>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지분은 정부가 보유한 것으로 본다.</u> 제40조(벌칙) <u>제13조(제28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8조제3항을-----</u> ----- ----- -----.
---	---